

적 용 기 간

2008.07. ~ 2009.06.

덕수궁 중화전·중화문 화재 대응 매뉴얼

2008. 6.

작 성 자	덕수궁관리소
담당기관	덕수궁관리소

목 차

I. 개 요	1
1. 목 적	1
2. 적용 범위	1
3. 매뉴얼 수정 및 보완	1
4. 건축물 및 보유 문화재 현황	2
5. 자체소방시설	2
6. 자체소방조직	5
II. 초동진화	7
1.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7
2. 신고요령	7
3. 신고 및 연락 체계도	8
4. 덕수궁 비상연락망	8
5. 소방차 출동범위와 거리	10
III. 소산활동	11
1. 소산 우선순위	11
2. 소산시 주의사항	11
3. 중화전 내 소산목록 및 절차	11
4. 덕수궁 경내 화재시 기타 문화재 소산 계획	12
IV. 화재예방활동	13
1. 소방 시설물 관리	13
2. 전기 시설물 관리	14
3. 가스 시설물 관리	14
4. 산불 방지 활동	15
5. 기타 위험물 관리	15
6. 소방훈련 계획	17
【 부 록 】	18

I. 개 요

1. 목 적

본 매뉴얼은 덕수궁 중화전 및 중화문의 화재발생시 불의의 화재에 대한 자체적인 초동대응으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경내 관리 및 감시인력 등 자체적인 인력으로 화재에 초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행동을 표준화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및 초동진화에 목적을 둔다.

2.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 중화전 및 중화문(보물 제819호)

- 지정번호 : 보물 제**819**호
- 지 정 일 : **1985. 1. 8**
- 소 재 지 : 서울 중구 정동 **5-1**번지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국유
- 건축현황 : 중화전 **409㎡**(정면
한식목조와가(팔작지붕)
중화문 **83㎡**
한식목조와가(팔작지붕)
- 화재특성 : 목구조물로 화재에 취약



나. 사용대상 : 일반 관람객 및 덕수궁관리소

다. 임 무

- 중화전 및 중화문 내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예방활동 전개
- 적극적 초동진화를 통한 문화재 피해 최소화

라. 유관기관 : 중부소방서, 남대문경찰서, 중구청, 서울시청, 산림청

3. 매뉴얼 수정 및 보완

- 작성자 : 덕수궁관리소 방화관리자
- 주 기 : 정기 - 년 1회(6월말까지) /

수시 - 각종 시설물 증·개축 시, 방화관리자, 관리·소유자 변경시

4. 건축물 및 보유 문화재 현황

가. 중화전 및 중화문 건축현황

구분	중화전	중화문
건축구조	한식목조 1층와가(팔작지붕) 3개동	한식 목조 1층 와가(팔작지붕) 1개동
건축면적	579㎡	83㎡
용도	궁궐 정전	궁궐 정전 대문
부지면적	69,017.8㎡	
특이사항	덕수궁(사적124호) 내부에 중화전, 중화문 건물 위치됨	

나. 덕수궁 보유 기타 문화재 현황

명 칭	문 화 재	지 정 일	수 량	비 고
덕수궁	사적124호	1962.7.25	1	
중화전·중화문	보물819	1985.1.8	2	목조고건물
함녕전	보물820	1985.1.8	1	목조고건물
흥천사종	보물1460	2006.1.17	1	동종
보루각자격루	국보229	1985.3.3	1	물시계
석조전 동관	등록문화재80호	2004.2.6	1	석조건물
석조전 서관	등록문화재81호	2004.2.6	1	석조건물
정관헌	등록문화재82호	2004.2.6	1	조적조

5. 자체소방시설

가. 경내 소방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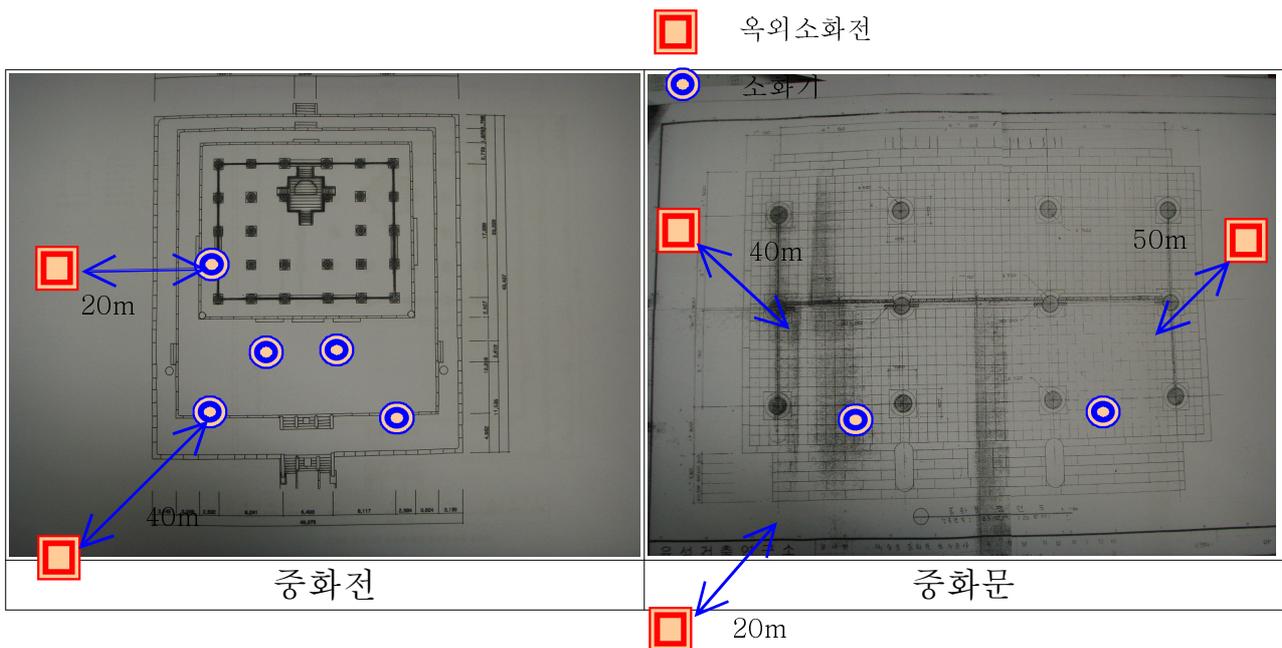
구 분	소 화 기			소 화 전	경 보 설 비	CCTV
	분 말	하 른	계			
소 방 설 비	18	80	98	옥외소화전:13	석조전	18
소 방 용 수	살수차 1대 (1ton) / 옥외소화전 저수용량 : 30ton 연못(660ton): 거리 300m / 분수대(600ton): 50m					

※ 소화시설별 특징

옥외 소화전	분말 소화기	하론 소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즐 토출 압력: 2.5kg/cm² - 방수량: 350L/min - 동절기 동파에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일반화재, 유류, 전기 화재 진화용 - 연소면적 : 0.8~ 2.0㎡ - 높은 소화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일반화재, 유류, 전기 화재 진화용 - 연소면적 : 0.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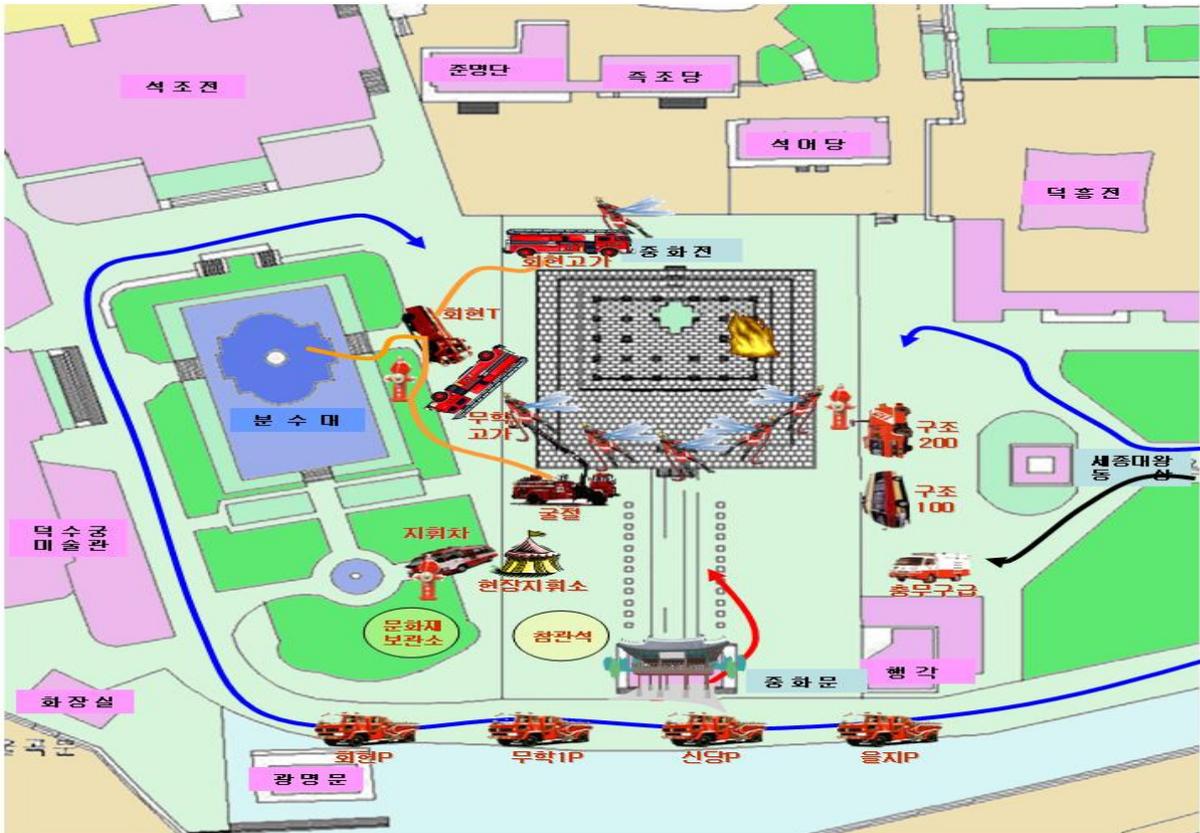
살수차	연못	분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즐 토출 압력 : 2.5kg/cm² - 방수량: 1TON - 동절기 동파에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경관용 및 화재소화 - 수량 : 660ton - 동절기 용수 사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경관용 및 화재소화 - 수량 : 600Ton - 동절기 용수 사용 불가

나. 중화전 및 중화문 소방시설 현황





다. 중화전 및 중화문 소방차 진입로



○ 소방훈련 활동사항

- 선착대 소방력을 옥내집중 투입 신속한 화재진압
- 사다리 전개 천공드릴 활용 천장파괴 및 진압
- 고가사다리차 활용 지붕에 대원투입 기와파괴 및 방수
- 지붕투입 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에어매트리스 전개

6. 자체 소방조직

가. 자위소방대 구성

(총원 : 59 명)
< 주간 : 09:00 ~ 18:00 >

< 야간 : 18:00 ~ 21:00 >

나. 자위소방대 임무

① 공통사항

- 소화설비 위치 숙지, 소화설비 현황과 사용 방법 숙지
- 화재발생시 소화기 및 옥외소화전으로 초기 진화 실시
- 소산가능한 문화재 소산실시, 소방대 출동차량 진입유도 및 정보제공, 활동 지원
- 소방차 도착 후 소방관 지휘하에 화재 진압

② 분대별 임무

분 대 별	임 무
본부분대	직장반,차석순으로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소수방분대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방호복구 분 대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비화경계,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관설소방대 유도 방화문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의료구호 분 대	질식,중경상자의 응급처치
	민방위 업무수행
	사망자 안치 및 질식등, 경상자 지정 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

③ 방화관리자 임무(000)

-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신고체계 및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교육
 - 대상 : 자위소방대 및 감시인력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소산가능한 문화재 소산 실시
- 소방대 출동차량 진입유도 및 정보제공, 활동 지원
- 소방차 도착 후 소방관 지휘하에 화재 진압

④ 감시인력 임무

- 재난(화재, 훼손 등) 방재 문화재 상시감시, 주변경계 및 순찰
- 소화설비에 의한 초동진화

♣ 화재 재난 대응 필수요원 임무

1. 관리소장 : 재난상황 총괄 지휘 및 임무지시
2. 연락반(서무계장) : 각 유관기관 전파
3. 화재대응반(관리계장) : 초동진화, 자위소방대원 편성

II. 초동진화

1.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가. 화재 인지

- 발견자 : 119신고
- 초동조치 : 덕수궁 경내에 화재상황 전파 및 대피 유도

나. 화재 접수 및 자위소방대 집결

- 1차 집결지 : 석조전 앞
- 2차 집결지 : 중화전 및 중화문 앞

다. 화재 진압 및 문화재 소산

- 중화전 및 중화문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 시도
- 전기 차단 실시 및 가스시설(저장탱크) 이운
- 소화기 진화 실패시 중화문인근의 옥외소화전을 이용하여 2차 진화 시도
- 현판 소산 실시

라. 관련기관 통보

- 중부소방서 : 화재 진화 경위, 진화요청(서울시재난소방본부 통보 병행)
- 남대문경찰서 : 문화재 보호조치 또는 반출(문화재청 통보 병행)
- 중구청 및 남대문경찰서 : 화재 현장 차량 및 인원 통제

마. 소방차 진입로 확보

- 중화전 및 중화문 진입도로 : 소방출동대 진입유도 및 일반차량 진입 금지
- 덕수궁 경내 입구에서 차량 통제

바. 지휘권 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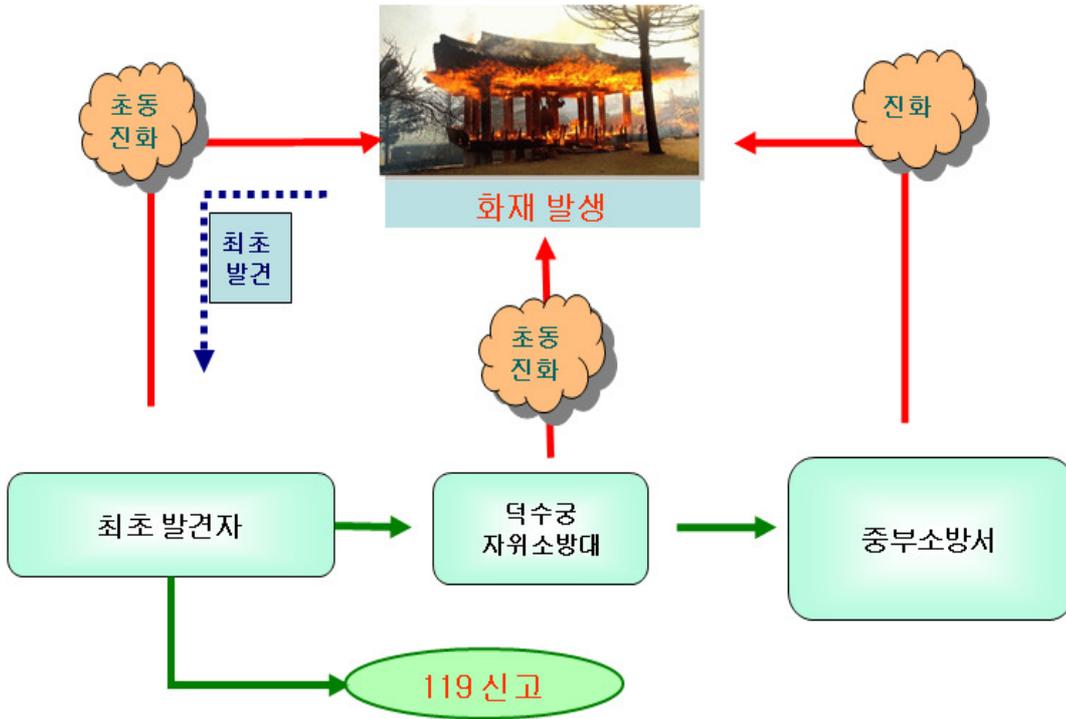
- 중부소방서 도착시 지휘권을 인계하고 협조하여 화재 진화에 힘쓴다.
- 화재 진압시 불씨로 인한 2차 화재에 주의한다.

2. 신고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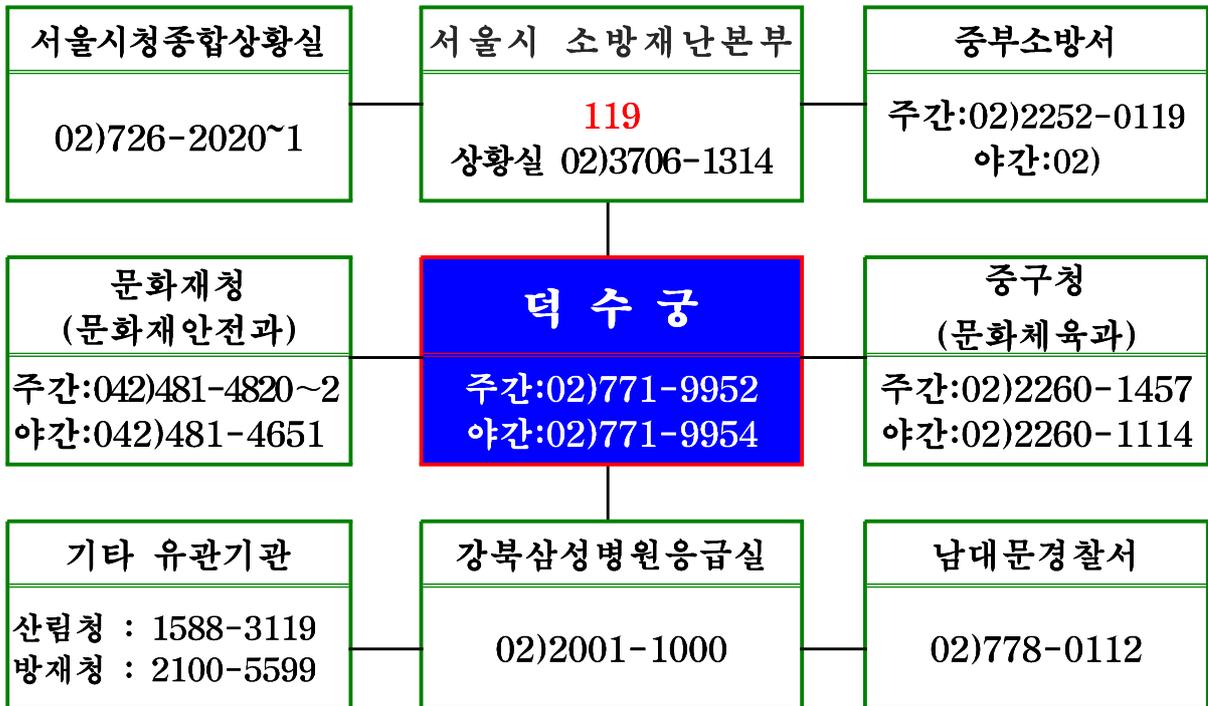
- 정확한 위치와 주소를 말한다.(평상시에 전화기 옆에 기재)
- 화재 종류(일반, 유류, 전기, 가스)를 말한다.(목조건축물은 일반화재임)
-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을 침착하게 알려준다.
- 소방서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다.

※ 일반전화는 10초 정도가 경과하면 주소와 연락처가 소방서에 나타나고, 휴대전화일 경우 전화번호만 나타난다.

3. 신고 및 연락체계도



4. 덕수궁 비상연락망



※ 자체 비상연락망

연번	성명	연락처	휴대폰	비고
1				자위소방대 대장
2				주간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야간
13				야간
14				야간

❖ 화재 발생시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

1. 소방관서

- 서울 중부소방서
 - 상황·단계에 따른 화재현장 지휘
 - 인명검색·구조 및 화재진압
- 서울 소방재난본부
 - 상황·단계에 따른 화재현장 지휘
 - 인명검색·구조 및 화재진압

2. 지방자치단체

- 서울 중구청
 - 화재진압을 위한 진화자원(인력, 장비) 동원 및 지원
 - 기타 유관기관 진화자원 지원 유도 등
- 서울시청 : 화재진압을 위한 민간자원 동원경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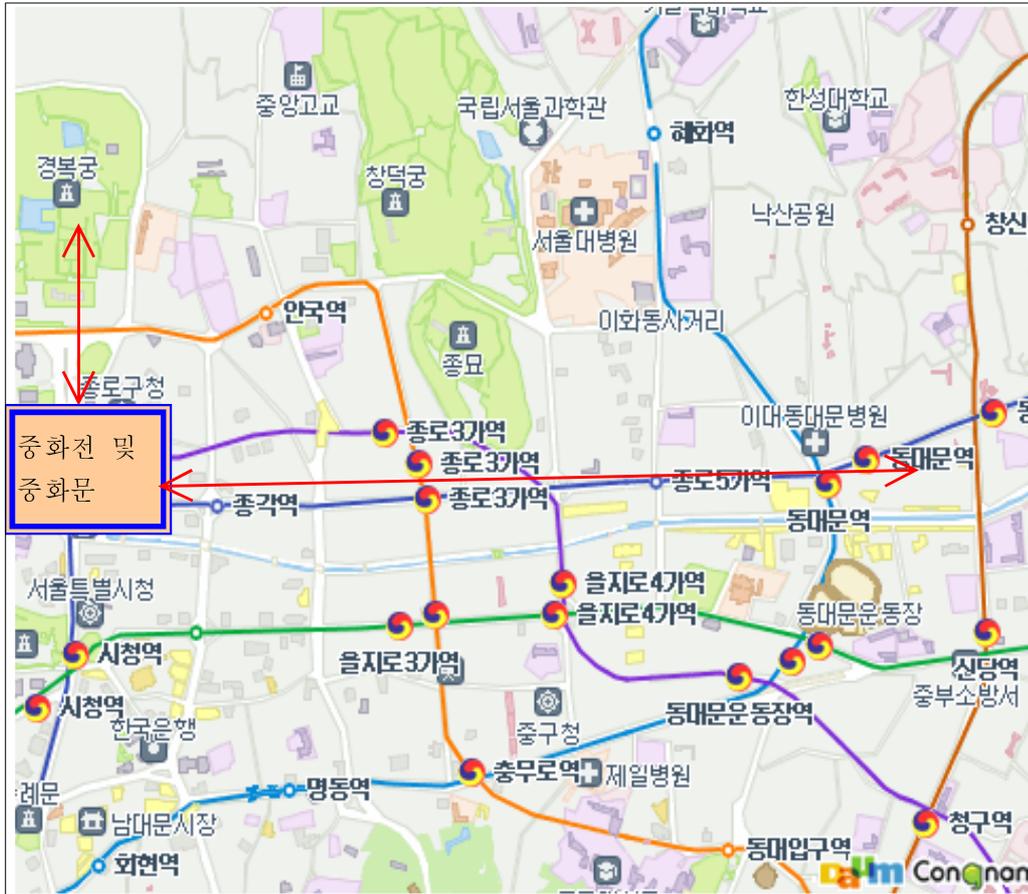
3. 남대문경찰서

- 화재현장 및 도로주변에 대한 차량, 인원 등 통제
- 방화 여부 조사 및 사상자 신원 파악

4. 문화재청

- 문화재 피해 상황에 따라 관계전문가, 담당자 등 현지조사관 파견 및 피해 복구 대책 수립

5. 소방차 출동 범위와 거리



출동 구분	파출소명	예상출동소방력			소방용수 시설	방수 구수	수관 연장수
		차량	인원	출동거리 (소요시간)			
1차대	회현	4	10	1.7km(6)	2823외 1	1	53본
2차대	충무로	3	9	2.3km(7)	2823외 1	1	3본
3차대	을지로	3	9	3.5km(10)	2823외 1	1	5본

Ⅲ. 소산활동

1. 소산 우선순위

- 1순위 :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또는 핵심부분, 부재)
- 2순위 : 훼손이 임박 또는 진행 중인 문화재
- 3순위 : 기타 문화재

2. 소산시 주의사항

- 유사시에 대비하여 소산문화재 목록에 지정구분, 명칭, 크기, 재질, 무게, 소산장소 등을 명시해 둔다.
- 이운 시에는 항상 충격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에 주의하고, 도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출장소에 감독자를 배치한다.
- 화재 피해가 예상되는 이운 불가능한 문화재는 방화피복 등으로 피해 최소화

3. 중화전 내 소산목록 및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인 1조로 2명은 파괴도구(망치, 펜치, 만능도끼 등)를 들고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현판을 내린다. 밑에 대기하고 있는 2명에게 현판을 인계한다(주련도 동일) 2. 2인1조로 관리소로 반출한다. 3. 관리소까지 거리 30m, 10분 소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풍을 접어서 반출한다. 2. 6인1조로 관리소로 반출한다. 3. 관리소까지 거리 30m, 반출소요시간 10분

4. 덕수궁 경내 화재시 기타 문화재 소산 계획

문화재 소산 기본 방침

1. 소산 방침

- 화재에 의한 피해 예상시 국가지정 또는 비지정문화재를 구분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소산한다.
- 국가지정문화재를 우선시하고 다음 비지정문화재 순으로 소산하며, 지정문화재 가운데 소산이 비교적 쉬운 경량문화재를 우선으로 한다.
- 소산 문화재는 지정구분, 크기, 재질, 무게, 소산장소 등을 명시해 둔다.

2. 경량문화재의 소산에 관한 사항

- 소산대상은 유형의 문화재 가운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에 한한다.
- 화재에 취약한 지류, 섬유류, 가죽류 문화재는 최우선 순위로 소산하여야 하며, 목재, 금속, 석재 문화재 순으로 소산한다.
- 긴급상황시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가까운 곳으로 우선 격리 후 보다 안전한 2차 장소로 소산 한다.(도난방지를 위해 경비원 배치)
- 소형의 운반상자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며,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비를 갖추고 가급적 2인 이상이 운반하는 것이 좋다.

3. 중량문화재 소산에 관한 사항

- 목조문화재는 해체시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서 기록 및 숙지한다.
- 모래주머니로 대상문화재를 애워 싼다.
- 이운불가능한 문화재와 같은 경우는 완충피복을 씌워 파손을 최소화하며, 크레인 등 중장비 동원 가능시 적극 활용하여 이운.
- 이동이 불가능한 문화재는 방화피복 등을 씌워 피해를 최소화 한다.

4. 소산문화재 대피 장소

- 화재 장소에서 격리시킨 문화재는 2차 피해(훼손,도난)로부터 보호를 위해 안전한 자체 보관·수장 시설이나 관리소, 경찰서, 인근박물관 등에 옮겨 보관한다.

5. 문화재 운반에 필요한 용구

- 운반용구는 지정된 장소에 상시 비치해 두어야 하며, 관계자 모두에게 숙지 시킨다.
- 운반상자 : 나무판재 혹은 가벼운 소재로 만든 상자.
- 완충 포장재 : 솜포대기, 골판지, 부직포 등
- 소화담요 및 방화 피복: 화재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담요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며, 운반 시에도 활용할 수 있음.

IV. 화재예방활동

1. 소방 시설물 관리

- 소방관계법상 기준시설 점검 실시
- 주기적인 소방관련 훈련 실시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및 정비
- 상주 인원의 소방시설물 사용능력 실태 확인
- 자위 소방대 구성 운영
- 화재시 대처요령 매뉴얼 작성 여부 확인
- 비상연락망 점검(월 1회 이상)
- 방화관리자 지정 및 운영
- 소방시설 주위에 방해요소 및 위해요소 확인(월 1회 이상)
- 저수탱크, 동력 펌프 시험운용 및 수원 확보 점검
- 식당 및 보일러실은 자동 확산 소화 용구 설치
- 자체 의용 소방대 구성 및 운용(인근 지역주민과 연계 추진)
- 각종 소화기 충약 상태 점검 및 소화전 시험운용(월 1회 이상)

소화기 관리 및 점검 기준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작동점검 기능으로는 소화기의 외관, 압력, 노즐 등 소화기 외관 및 기능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정상 여부, 소화기 안전핀 및 손잡이 부식여부 노즐파손여부 외함 부식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정밀종합 점검으로는 소화약제의 응고상태 내부 압축가스의 충만상태를 점검하고 이때에는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서 귀에 대면 모래 흐르는 소리가 나와만 정상으로 볼 수 있고 소리가 없거나 툭툭 덩어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되지 않아 사용을 할 수 없는 소화기로 판단된다.
- 축압식 소화기의 압축가스는 게이지의 정상여부(녹색부분)로 판단하면 되지만 압력게이지의 자체 고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화기의 손잡이를 눌러서 소화약제를 약간 방사 하였을 때 게이지의 작동상태 및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 작동 여부를 판단
-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5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노즐 및 소화기 몸체와 손잡이 부분에서 패킹등의 파손으로 압축가스가 누출되어 사용이 불가할 수가 있으니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는 즉시 교체

소화전 관리 및 점검 기준

소화전은 월별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소화전함의 외관 작동 기능 점검으로 소화전함 손상, 문의 개폐상태 등을 점검하고 소화전 주위에 저해하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정밀점검으로는 소화기의 전기계통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소화전 개폐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되어 있는지, 소화기 용구는 사용할 때에 쉽게 반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소화전함 호스 배관 관부속 밸브류등의 변형이나 손상 부식되지 않았는지, 관창은 이중 제어관창인가, 결함부등에서 누수가 되지 않는지 각 밸브의 개폐조작은 용이한지, 수동밸브의 경우 개폐상태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소화시험을 한 후에는 호스의 물을 완전히 배수하여, 동파되거나 갈라짐 등의 현상을 예방하여야 하며, 건조시켜 호스가 부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폐 및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방서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 이상이 발생시에는 즉시 교체토록 한다.

2. 전기 시설물 관리

- 규격에 맞는 전선 및 전기용품 사용 및 실태 점검
- 분기회로마다 누전차단기 사용 및 점검(월 1회 이상)
- 외부 노출 전기설비의 비 피해 우려 점검
- 피뢰침설비 설치 상태 확인 및 점검
- 노출되어 있는 전선 및 전선 피복 이상유무 점검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전기시설 관리 및 점검 기준

- 피뢰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접지저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지, 변전시설은 외부인 접근 통제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이 부착되었는지, 변압기에 물의 침입 및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 전등 및 전기기구 사용량의 과부하는 없는지, 전기용품 및 콘센트 플러그 주변 청결은 유지하는지, 전원선의 꺾임, 눌림은 없는지 수분의 접촉은 없는지,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 분기회로마다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전기배선의 피복상태 및 배선상태를 확인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임의 가설은 없는지 확인

3. 가스 시설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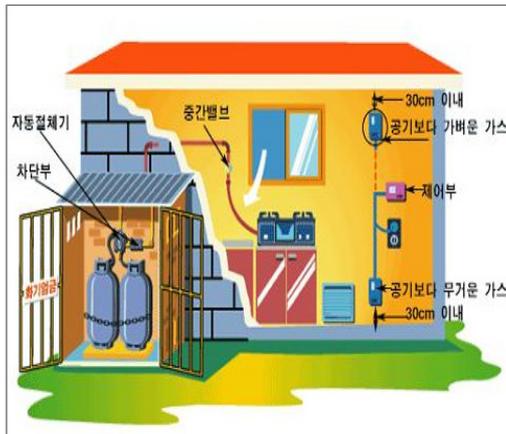
- 용기 주변 화기 물질 여부 확인
-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누출 자동 차단 장치 점검(월 1회 이상)

- 가스용기는 채광이 되어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 위치 여부
- 가스 사용장소 환기시설 설치 여부
- 용기 용량이 100kg초과시 용기보관실 별도 설치 운용
- 용기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고 넘어질 우려 여부 확인
- 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 설치 여부
- 가스 인입부 및 가스관 접합부위의 가스 누출 점검(월 1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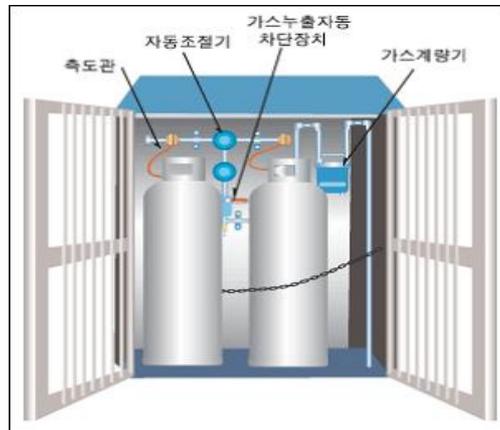
가스시설 관리 및 점검 기준

- 용기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집합 설비를 설치하되, 그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로 용기보관실을 설치, 경계 표시를 할 것.
- 100kg 이하인 경우에는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취사설비인 경우 안전을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출자동차단기, 가스누출 감지기 및 확산소화기를 설치한다.
-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는 제외한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이내(용접 또는 용단작업용 시설은 제외)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할 것
-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등 연소기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로 조일 것

가스 시설물 구조



가스용기 보관함 구조



4. 산불 예방 활동

- 목조건축물 주위 산불방지 안전선 및 방화선 구축(잡목제거 등)
- 주변 등산로, 탐방로 등 산불감시 순찰원 배치 및 감시활동 전개
- 산불조심기간(봄2.1~5.15/가을11.1~12.15)중 산불조심 홍보물(현수막 등) 게시
- 산불조심기간 중 관계기관과 협의, 등산로 폐쇄 등의 조치 실시

5. 기타 위험물 관리

- 위험물 주변에는 화기사용을 금지

-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은 채광, 눈 및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연료탱크는 연소기로부터 우회거리 2m 이상 간격유지
- 화기업금 및 화기취급시 안전관리 점검
- 각종 건축물 주변 인화성물질, 위험물질 방치여부 점검
- 위험시설물 위험표시 설치
- 문화재 인접 소각로 사용 금지 및 이설 조치
- 화덕 및 아궁이 사용시 화기관리 철저, 사용 후 불씨 소각 철거

위험물 및 화기시설 관리 및 점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주변에는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유류탱크 및 보일러실은 반드시 채광, 눈 및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자동확산소화기를 천정부 설치 ○ 연료탱크는 연소기로부터 우회거리 2m이상의 간격을 띄우고 설치하고, 연소기 등에 기름을 넣을 때는 불씨를 끈 후 기름을 넣고, 불이 있는 채로 운반을 금지한다.

※ 보일러 등의 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관련)

종 류	내 용
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이격 - 긴급상황시 연료차단 개폐밸브를 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 설치 - 연료탱크 또는 연료 공급 배관에는 여과장치 설치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가스 등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 환기구 설치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긴급시 연료차단 개폐밸브를 연료용기로부터 0.5미터 이내 설치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이격 ○ 실내 보일러 설치시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
난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이격,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 ○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움
노·화덕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설치시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등에 설치 ○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 ○ 노, 화덕 주위에 화기물질 유출방지용 턱을 높이 0.1미터이상 설치

6. 소방 훈련 계획

주 기	훈련주체	훈련내용
상반기(4~6월)	덕수궁 자위소방대	자위소방대 소집 및 자체 진화훈련
하반기(9~11월)	덕수궁 자위소방대, 소방서	자위소방대, 소방서 합동 훈련

○ 소방훈련 종류 : 자체 소방훈련 / 합동 소방훈련

○ 자체 소방훈련

- 대상 : 자위소방대

- 방법 : 자위소방대를 중심으로 소화기, 소화전을 활용한 초동 진화 위주 시행

- 순서 : 화재발생⇒119신고, 신고자 초동진화⇒자위소방대 소집 및 진화

○ 합동 소방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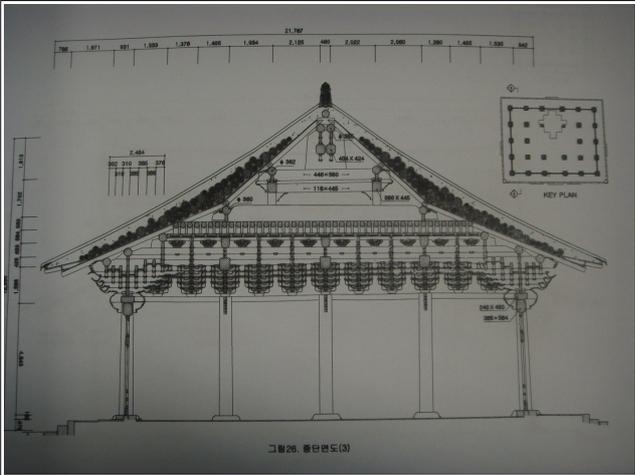
- 대상 : 덕수궁 자위소방대, 소방서, 경찰서 및 기타 유관기관

- 방법 : 자위소방대에 의한 초동진화, 소방서 진화자원(인력, 장비)에 의한 진화 병행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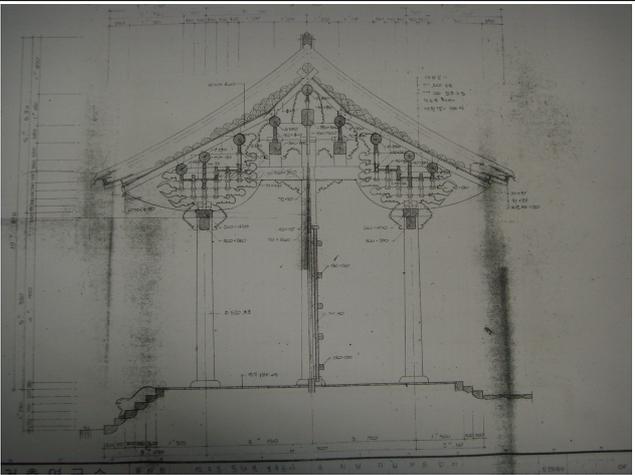
- 순서 : 화재발생⇒119신고, 신고자 초동진화⇒자위소방대 소집 및 진화 / 문화재 소산⇒소방서 및 경찰서 등 출동⇒소방대원에 의한 진화/응급후송 등⇒진화(상황 종료후 별도의 소방교육 등 시행)

※ 소방 훈련시 부록 2 참조, 별도의 훈련 시나리오 마련 및 시행

중화전 중화문 종단면도



중화전 종단면도



중화문 종단면도